

Korean Tax Update

March 2020, Issue 69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문보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3.17.(화)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6 의 3 신설)
 -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 2)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99 의 11 신설)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함(2억원 한도/ 소기업: 60%, 중기업: 30%).
-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확대**(조특법 §104 의 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함(5년 or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 §108 의 4 신설)
 -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4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함.
-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조특법 §108 의 5 신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20년 한시적으로, 과세기간(1년)의 공급대가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함.

- 6)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특법 §109 의 4 신설)
 - 자동차를 2020 년 3 월에서 6 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을 감면함.
-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조특법 §126 의 2 ②)
 - 2020 년 3 월에서 6 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 배로 상향함(15~40% → 30~80%).
- 8) **접대비의 필요경비·손금산입 한도 일시적 상향**(조특법 §136 ④ 및 ⑤)
 - 내국인이 2020 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필요경비·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 억원 이하는 0.35%로, 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는 0.25%로, 500 억원 초과는 0.06%로 상향함.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개정전 한도	0.3%	0.2%	0.03%
개정후 한도	0.35%	0.25%	0.06%

기획재정부,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전문보기]

'20.3.17.(화)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3.23.(월)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4 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인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문보기]

'20.3.6.(금) 인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 원) 폐지하고,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을 상향(3 만원 초과 → 5 만원 초과)하며,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

[판례]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승)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 두 41771 판결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피고에게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 조 제 1 항, 제 60 조 제 1 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피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피고의 재산이 외국에는 있으나 국내에는 없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징수위탁을 위한 상호합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 도 11381 판결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실질적 소유자 등)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 34 조의 위임에 따른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50 조 제 4 항의 괄호 규정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 분의 100 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괄호 규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 34 조 제 6 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살펴보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 34 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지는 실질적 소유자는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완전모회사는 그 내부의 사결정 등을 통해 완전자회사를 직접 지배·관리하게 되고, 실제로 다수의 해외법인 소유 해외금융계좌들이 완전모회사의 자금은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완전자회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완전모회사를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입법목적에다가 그 수범자 집단의 한정성·관련성·전문성을 더해 보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 34 조 제 6 항에 의하여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의 구체화를 위임받은 시행령 제정자가 완전모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신설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그 신설 이전부터 시행령 제 50

조 제 4 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던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 병렬적으로 새로운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을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이 사건 괄호 규정'이 국제조세조정법 제 34 조 제 6 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국패)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 다 264161

-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납부한 다음, 피고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초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지급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는 2009 년 및 2010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제 1, 2 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납부한 것일 뿐 각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을 '분할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본문에 따라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 점, 과세처분이 판결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대법원 94 다 16045, 대법원 2012 다 51097 등 참조), 증액경정처분 이후 전체 세액 중 일부가 경정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그 취소사유에 따른 환급세액이 각 신고 또는 부과에 따라 납부한 각각의 세액 중 일부로 특정된다면 그 국세환급금은 각각의 납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당초 신고나 결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납부 등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까지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

[심판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시설물의 이용요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할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19 중 3780, 2020. 2. 4.

-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고객이 쟁점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리조트카드 할인의 경우 발급과 이용에 제약이 없어 누구나 할인 받을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자신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요금을 공시하면서, 할인가격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주주, 리조트카드 소지자 등 특정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별도의 가격으로 공시하고 있어, 특정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특정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상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인식되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시설에 대한 할인제도는 매우 복잡(계절에 따라 수시로 변경됨은 물론, 조건별로 할인율도 다양)하여 단골 고객이 아닌 최초의 이용 고객에게는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이용요금이라고 인식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직접 공시까지 한 가격(할인 전 가격)에 대해 청구법인은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고, 공시가격을 단순한 형식적인 요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거나 무시할 경우, 청구법인의 편법적 가격정책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점, 리조트카드 발급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가입비와 연회비 등이 없어 발급 및 이용에 제약이 없다 하더라도, 카드 발급 전·후를 기준으로 엄연히 가격차별이 존재하는 이상, 할인된 가격을 적용 받으려면 고객에게 카드발급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세 신고 후 60 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취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조심 2019 지 1789, 2020. 2. 5.

- 「지방세법」은 취득원인별로 취득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 20 조 제 1 항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무상승계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한 날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 일이 지나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나, 같은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하되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 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이 건 유상승계 취득분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 일이 경과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하고 이때부터 60 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적법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면허권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과거에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부 3103, 2020. 2. 10.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서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6 두 10023 판결), 이 때의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된다 할 것(조심 2017 부 33)인데, 관련 소송은 쟁점면허권 관련 거래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립지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환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환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된 소송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000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를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시키는 판결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면허권 관련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들은 쟁점면허권 양도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소송의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등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배당금(중간배당) 지급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19 중 2927, 2020. 2. 12.

- 상법 제 462 조의 3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기준일 제도는 회사의 주식사무 편의나 이익배당을 할 주주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자회사가 배당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일이나 쟁점배당금 지급일을 그 배당기준일로 보아 회사 주식사무를 처리하거나 주주를 특정할 수 있는 등 단순히 배당기준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이사회 결의나 그에 따른 쟁점배당금 지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7 두 36748)이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배당금이 부당이득금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규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과세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자초한 것이거나 실질적인 분쟁

이 없음에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가장하기 위해 작출한 소송상 쟁점인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4 누 1449)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자회사는 쟁점배당금 지급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여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배당금을 반환한 일련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1인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한 쟁점자회사와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19 지 1769, 2020. 2. 13.

- 청구법인들은 물적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 11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명예퇴직보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모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서 4103, 2020. 2. 18.

- 청구법인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쟁점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 기산일을 청구법인의 전입일이 아닌 분할 전 모회사의 입사일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1.1. 「소득세법」 제 22 조의 개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05 조에 따라 퇴직소득 중간정산을 한 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명예퇴직금은 2014년 귀속 퇴직소득으로서 2013.1.1.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05 조에서 퇴직소득 중간정산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한 점, 위 개정 「소득세법」 제 14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3 조에 따르면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구분할 실익이 없고, 쟁점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명예퇴직자는 당초 모회사의 사업부

분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액의 정산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명예퇴직금 산정방식상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그 액수가 정해진다 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예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자회사 입사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출확약수수료를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확약기간 동안 안분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19 서 0133, 2020. 2. 26.

-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70 조 제 3 항 본문 규정에 따라 쟁점대출확약수수료는 청구법인 이 차주에게 대출확약서를 발급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날에 관련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그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출확약기관이 계약체결 전 차주의 PF 사업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출확약수수료 대가에 직접 대응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출확약기관이 대출확약수수료를 지급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은 차주의 미분양에 따른 대출원리금 변제 불이행 위험을 대출확약기관이 확약기간 동안 대신 부담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대출확약기관이 대출확약기간 동안 차주의 미분양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000 의 “금융투자회사의 채무보증 실태 및 향후 대응방안”에서 대출확약을 채무보증의 한 종류로 분류하여 건전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고,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대출확약금액을 총위험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로 확인되는 점, 대출확약 계약체결 당시 예상손실액과 대출확약 기간 동안 실제 대출확약기간에 발생한 손실은 상이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 건 청구법인이 체결한 대출확약 계약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이 없었다는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청구법인이 대출확약기간 동안 차주의 미분양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70 조 제 3 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수입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PF 사업시 대출확약 계약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거래 유형으로서 대출확약수수료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해 「법인세법」 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청구법인은 대출확약이 한국회계기준원의 000 의 금융보증계약에 해당되어 제 1018 호(수익) 적용사례 14 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대출확약기간에 걸쳐 기간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 회계처리 방법의 적용에 이익의 자의적인 조작 가능성이 개입될 여지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수료를 그 수입일에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 43 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예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과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1, 2020. 1. 31.

-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제휴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제휴회사의 포인트 및 사이버머니 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 3 조 제 1 항 제 8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권면금액이 3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 3 조 제 1 항 제 8 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제휴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일정 물품등(커피 또는 상품권 중 고객이 선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3 만원 초과 모바일결합쿠폰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 3 조 제 1 항 제 8 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한편 모바일쿠폰 발행 후 유효기간의 경과로 모바일쿠폰이 미사용, 폐기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 3 조제 1 항제 8 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10, 2020. 1. 31.

-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발표회 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 1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39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 등의 귀속 사업연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 2. 11.

- 「법인세법 시행령」 제 93 조 제 4 항 제 2 호 가목(2019.2.12. 대통령령 제 29529 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중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 56 조 제 1 항(2018.12.24.법률 제 16008 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자동차 제조회사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시험·연구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7% 취득세율을 적용하는지 또는 기타 차량에 대한 2%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부동산세제과-368, 2020. 2. 18.

-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취득세율은 「지방세법」(법률 제 16855호, 2019.12.31.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2조 제 1항 다목(현행 '라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단순한 명의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부동산세제과-369, 2020. 2. 18.

- 다른 법률에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권리행사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해당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선행하도록 하고 있고,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이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발생하게 되는 바, 각각의 독립적인 법률주체인 두 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산을 양수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되므로 근저당권의 명의 변경을 단순한 기재사항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인간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저당권을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이전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 28조 제 1항 제 1호 다목 2)에 따른 세율(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2019년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고 이후 서울에 있는 기존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임대용 부동산이 취득세 증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세제-3210, 2020. 2. 25.

-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증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기고] BUSINESS Watch, 더 가까워진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사보기]

Tax 본부 김경조 Director (02-2112-34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20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